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목 30352-1196	(전화: 480-1405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구 칭 장	시 장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8.5.		
보조기관	부청장	합 의 기 관	문 서 통 제
	건설국장		
	토목과장		
기안책임자	하수계장 (김규영)	15.18.12 지정기타작성 1988.5.10 1988.5.10	1988.5.10 1988.5.10
결유 수신 할 조	과안함조	발신명의	결재 1988.5.10 1988.5.10
내 용	도시계획사업 (도모, 하수도) 실시계획 인가		
제 1 안 (대부결재)	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(74.3.15) 호로 도시계획시행규칙 및		
지구고시된 문촌동 아파트 주변 마거 신설공사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1 호 (88.2.24) 로 공람 공고한바, 이 의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25 조,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 고시코자 합니다.			
첨부 : 1) 고시안 1 부. 2) 위치도 1 부. 끝.			
제 2 안	1275		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

수신 : 서울특별시

참조 : 시설계획과장

제목 : 같은 건

1.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돈촌동 아파트 주변 암거 신설공사에 따른

도시계획 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를 별첨과 같이 시행 하였기 보고

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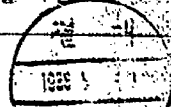
첨부 : 고시안 사본 1부. 끝.

제 3 안

수신 : 건설부 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

제목 : 같은 건



1. 우리시에서 강동구 돈촌동 아파트 주변 암거 신설 공사에 따른

도시계획 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를 별첨과 같이 시행 하였기 보고

합니다.

첨부 : 1) 고시안 사본 1부. 끝.

제 4 안

수신 : 총무처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. 관보 게재 구분 : 고 시

나. 관보 게재 건명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, 하수도) 실시



계획 인가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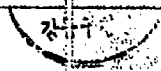
첨부 : 1) 고시안사본 2부. 끝.

제 5 안

수신 : 서울특별시청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시장관인 남인 의뢰



1. 도시계획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공문을 시행

코자 하오니 시장관인을 남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 부.

종무처, 건설부 시행공문 각 1 부. 끝.

제 6 안

수신 : 도시경비과장, 건설관리과장

발신 : 토목과장

제목 : 같은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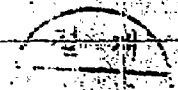
1. 우리구 관내 돈촌동 아마트 주변 암거 신설 공사에 따른 도시계획

1277

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를 병청과 같이 시행 하였기 보고 하오니

업무에 참( )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사본 1부. 끝.



서 울 부 북 시 고 시 제 8 호

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48호 (74. 3. 15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제74호 (88. 2. 24)로 도시계획사업 (도부, 하수부) 실시계획을 마치고 한 번의 압박후부터 압박 신청금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55조, 제56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
2. 토지 소유자 및 토지수용권자(이하 "토지소유자"라 함)의 이익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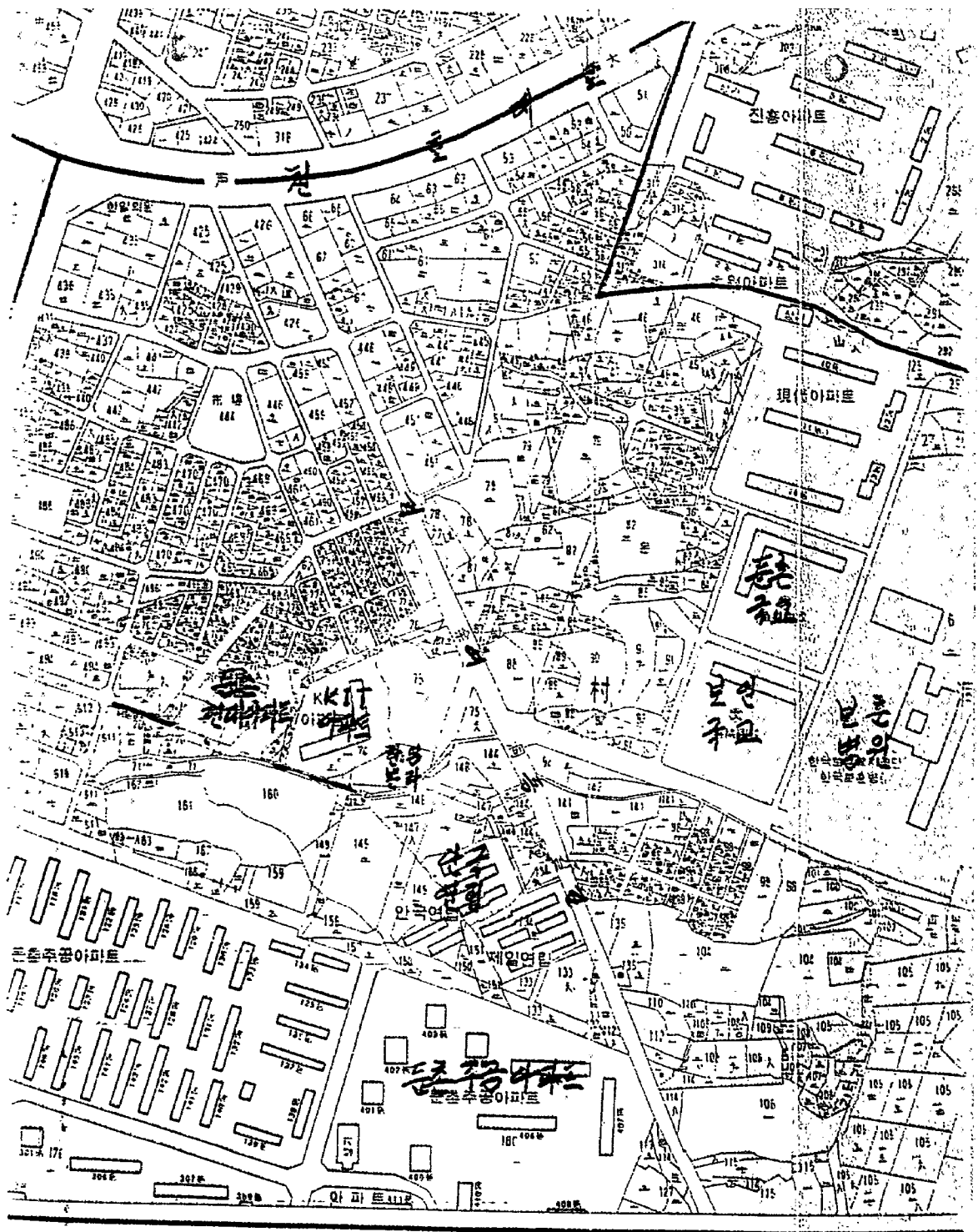
1988. 5.

서울특별시청

1. 사업시행처 : 강동구 관린동 70-99번지 - 70의5호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관린동 압박후부터 압박 신청금 사
3. 사업규모 : 압박지 (27 x 27) L = 729 M<sup>2</sup>
4. 사업시행과 : 서울특별시청 (강동구청장)
5. 사업대상 및 권리관계 : 인가일로부터 7년
6. 사업의 수용방법 : 보상금 지급
7. 토지 소유자 및 토지수용권자(이하 "토지소유자"라 함)의 이익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.

연번	지번	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1	강동구 관린동 70-99	165	강동구 관린동 603-3번지	김수환
2	강동구 관린동 70-100	110	강동구 관린동 432번지	김이진
3	강동구 관린동 70-13	555	강동구 관린동 432번지	김이진
4	강동구 관린동 72-1	133		서울특별시
5	강동구 관린동 74-2	664		서울특별시





1987年6月15日修正印刷  
 1987年6月20日修正發行